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62 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민병덕·염태영·김한규

이기헌 • 한민수 • 김재원

이상식 • 정진욱 • 김현정

박민규 • 이광희 • 이언주

윤후덕 • 윤준병 • 박홍근

서미화 · 이강일 · 황운하

의원(1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, 현재는 임차인이 '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',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.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, '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'의 기한을 '최근 2년간 3기'로 제한함이 타당함.

또한, '특별재난지역 선포'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,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 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'특별재난지역 선 포'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(안 제10조제1항제1호, 제10조의8, 제 11조제1항 및 제11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"임차인이"를 "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이"로, "경우"를 "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가건물 소재지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의8 중 "임차인의"를 "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가건물 소재지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"임차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「감염병의 예방

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"을 "제1항제2 호 및 제3호"로 한다.

- 1.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 급감염병
- 3. 상가건물 소재지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제11조의2의 제목 "(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)"을 "(임차인의해지권에 관한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또는 제2항에"로 한다.

②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재지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 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 해당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"제11조 및"을 "제11조, 제11조의2 및"으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차임연체액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.
제3조(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 ① 임 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 ① 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 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<u>임차인이</u> 3기의 차임액에 해 1. <u>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</u>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2년 동안 임차인이----<단서 신설> 다만, 상가건물 소재지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2. ~ 8. (생략) 2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0조의8(차임연체와 해지) 임차 제10조의8(차임연체와 해지) 임차 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 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u><단서</u> 신설>

제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<u>임차건물</u> 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 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년 동안 임차인의</u>
다만, 상가건물 소재지에 「재
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
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
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
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
아니한다.
세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①
<u>다음</u> 각 호의
<u> 어느 하나에</u>
1.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
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

른 제1급감염병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전 차임등이 감액전 차임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의2<u>(폐업으로 인한 임차인</u> 지의 해지권) ① (생 략) <<u>신 설></u>

3. 상가건물 소재지에 발생한
재난으로 인한 「재난 및 안
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
른 특별재난지역 선포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
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
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
제11조의2(임차인의 해지권에 관
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재지
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
지역이 선포된 이후 해당 재난
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의 중대
<u> </u>

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

	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	③ 제1항 또는 제2항에
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	
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	
발생한다.	
제13조(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	제13조(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
등) ① 제10조, 제10조의2, 제1	드) ①
0조의8, 제10조의9(제10조 및	
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	
정한다), <u>제11조 및</u> 제12조는	<u>제11조, 제11조의2 및</u>
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	
人)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